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설치한 혁신행정데이터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2월 17일까지에서 2028년 2월 17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01. 20. ~ 1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총리령 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(총리령 제200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) 제2조제1항 중 “2025년 2월 17일”을 “2028년 2월 17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총리령 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혁신행정데이터팀은 <u>2025년 2월 17일</u> 까지 존속한다. ② (생 략)	총리령 제1595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2월 17일</u> 까지 존속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